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(2023, 10, 17,)

#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권 하 나

#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# 검 토 보 고

# 1. 제출경위

가. 의안번호: 23-111

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3년 9월 26일(화)

라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6일(금)

### 2. 제출사유

망원유수지 풋살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 사무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을 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마포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민간위탁의 내용

1) 위탁운영 시설현황

위	치	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(망원동)		
현황	면적	990 ㎡		
	시설	풋살장(1면 800㎡), 조명탑, 관리실 1동, 그늘막 2동 , 벤치8개, 골대 2개		

- 2) 위탁기간: 3년 (2024. 1. 1. ~ 2026. 12. 31.)
- 3) 위탁사무 범위: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

4) 소요예산: 비예산

5) 수탁기관 선정방법: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

#### 나. 추진 일정

1) 2023. 9. : 성과평가 실시

2) 2023. 10. ~ 11. : 재계약 심사 및 선정 결정

3) 2023. 12. : 협약 체결

4) 2024. 1. : 위탁사무 시작

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1)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조

- 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5조
- 3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# 5. 검토의견

- 본 동의(안)은 현재 "마포구체육회"가 위탁·운영하고 있는 "망원유수지 풋살장"의 수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, 동일한 수탁기관(마포구체육회)과 "재계약('24.1.1. ~ '26.12.31. (3년)"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- 다만, 본 동의(안)은 일반적인 민간위탁 "재계약"이 "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"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2항 본문) 하는 것과 달리,
- "해당 사무(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)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면서 구

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"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2항 단서1))에 해당하여 "재계약"임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함.

-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무는 '망원유수지 풋살장' 의 운영·관리 업무로「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</u> <u>조례」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²)</u>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.
-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、저효율을 개선하거나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채택하고 있어.
- 풋살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、운영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 요되고 풋살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활성화 및 체육진흥 도모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 진 법인 또는 단체에서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 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

<sup>1)</sup>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, 2023.3.9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<u>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</u>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<신설 2021.5.6.>

<sup>2)</sup>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<sup>1.</sup>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<sup>2.</sup>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<sup>3.</sup>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<sup>4.</sup>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망원유수지 풋살장은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마포구체육회가 위탁 계약을 통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³)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.

#### 〈 망원유수지 풋살장 민간위탁 추진 연혁 〉

차수	계약기간	수탁기관	방식
1차	2017. 7. 1.~ 2018. 8. 31.	마포구체육회	최초
2차	2018. 9. 1. ~ 2020.12.31.	마포구체육회	재계약
3차	2021. 1. 1. ~ 2023.12.31.	마포구체육회	재위탁

그동안 운영실적을 살펴보면, 총 운영횟수 대비 예약률은 2021년 70%, 2022년 67%, 2023년 8월 현재 66% 예약률로 보통 혹은 양호한 수준임.

#### 〈 최근 3년간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 실적 〉

구 분	위탁료(원)	예약률(%)	이용인원(명)
2021년	4,978,980	70	12,580
 2022년	7,030,000	67	17,750
2023년(8월)	5,805,000	66	10,480

○ 이와 더불어 동 민간위탁 동의(안)의 재계약 대상 수탁기관(마포구체육회)은 위탁사무 성과평가⁴)(결과 88점/기준 60점이상)가 재계약 가능 점수 기준을 상회함.

#### <u>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(p.49)」</u> 〈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경우〉

- 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일 때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금지

<sup>3)</sup> **자립형(舊 수익창출형) 민간위탁**: <u>마포구의 예산지원 없이</u>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,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·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

<sup>4)</sup> 망원유수지 풋살장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

- 이와 같이 살펴볼 때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조례에서 정한 민간 위탁 대상사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, 위탁기간도 조례 규정인 3년 이내5)를 준수하는 등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에 어긋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최근의 현장 확인 지도·점검 시 결산보고서 제출, 인사·복무등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, 회계서류 작성 및 예산집행규정 준수 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는 바, 이러한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·감독이 요구됨.
- 향후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적이고 철저한 점검·평가를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.

<sup>5)</sup> 제13조(협약체결 등)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# 붙임 1 재위탁·재계약 민간위탁 추진절차(구의회 동의)

	구 분	재위탁(공개모집)	재위탁(수의협약)	재계약		
① 재위탁·재계약 추진계획 수립		민간위탁 지속필요성(시행사무 적정성 심의), 공개경쟁 가능성, 수탁가능업체,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 위탁사무 내용, 기간, 비용, 수탁자 선정방법 등 결정				
+		<b>₽</b>				
2	구 의 회 동 의	구의회 동의  ►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→ 의회 동의 받은 이후 6년 경과 마다 의회 동의 필요  ► 조례 §6① 의회 동의안 제출  ►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 → 구의회 동의 배제				
	•		•			
3	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 심의	-	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▶ 수의협약 근거사유 심의	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 ►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► 성과평가 결과 심의  ► 시정요구 결과 반영  ► 재계약 적정성 심의		
	•		4			
4	수탁기관 선 정	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▶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		_		
4		•				
<b>⑤</b>	재위탁·재계약 협약체결	재위탁·재계약 협약 체결 (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)				
	•	<b>→</b>				
<b>6</b>	위탁사무 인계인수 등	위탁사무와 시설 인계인수, 사무편람 작성과 비치 등				
7	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	<ul> <li>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지도·점검(감독), 감사: 필요 시</li> <li>※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한해 매년 2회(반기별 1회) 이상</li> <li>성과평가: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</li> <li>재위탁·재계약: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</li> <li>재계약: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반영</li> </ul>				

#### 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## 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

- 제4조(체육시설 과리、우영)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、운영을 한 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4.16〉
-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체육경기대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, 공정한 이용기회 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 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 관리공단 또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 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 다. 〈개정 2015.4.16〉
- 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,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〈개 정 2015.4.16〉

# 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-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 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

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-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
-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- 3. 경제적 효율성
-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
-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-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- 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21.5.6., 2023.3.9.〉
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21.5.6.〉
- ③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 〈신설 2021.5.6.〉

**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 등)** 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 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위탁사무명
-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3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-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- 5. 민간위탁기간
- 6. 수탁자 선정방식
-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- 8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- 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-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3.9.〉
- 1. 인적·물적 현황
- 2.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

- 3.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
- 4.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
- 5. 사건·사고 현황
- 6. 성과평가결과서
- 7.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
- ③ 구청장은 구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제13조(협약체결 등)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수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- 2. 위탁기간
-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-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.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
-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-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 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  - 제21조(성과평가)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  - 제22조(재계약·재위탁 등)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·재계약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